**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

|  |  |  |
| --- | --- | --- |
| **순번** | **분야** | **특별관리조치** |
| **가.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 | |
| (1) | 종묘업 | 1. 중국 특유의 희귀우량품종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 농작물, 종축·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 선종·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 농작물 신품종의 선종·배양 및 종자 생산 분야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4. 비준 없이 농작물의 생식질 자원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
| (2) | 어획업 | 1. 중국 경내 및 그 관할 수역에서 어업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중국 국적의 어업용 선박 등록·등기를 금지한다. |
| **나. 채광업** | | |
| (3) | 배타적 경제구역, 대륙붕 및 기타 관할해역에 대한 탐사·개발 | 1. 중국의 배타적 경제구역, 대륙붕 및 기타 관할해역에 대한 탐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
| (4) | 석유·천연가스 채굴 및 채굴보조 활동 | 1. 석유, 천연가스, 석탄층 가스의 탐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한 대외협력 전문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오일·가스회사와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5) | 비철금속광물, 비금속광물의 채굴·선별 및 채굴보조 활동 | 1. 희토광 탐사·채굴 및 선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허가 없이 희토광구에 진입하거나 광산지질자료, 광석 견본 및 생산공법·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2.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채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 방사성 광물 탐사·개발·선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6) | 금속광물 및 비금속광물의 채굴·선별 | 1. 흑연광의 탐사와 개발. |
| **다. 제조업** | | |
| (7) | 항공 제조업 | 1. 간선·지선 항공기의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6톤·9좌석 이상(6톤·9좌석 포함)의 범용항공기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는 합자·합작에만 한한다. 지면효과 항공기, 수면효과 항공기의 제조 및 무인항공기, 경항공기의 설계·제조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8) | 선박 제조업 | 1. 선박(선박 블록 포함) 수리, 설계 및 제조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9) | 자동차 제조업 | 1. 자동차 완성차, 전용 자동차의 제조는 중국측이 50% 이상(50% 포함)의 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일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 설립한 동종류(승용차류, 상용차류) 완성차를 생산하는 합자기업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중국측 합자 파트너와 공동으로 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2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10) | 통신설비 제조업 | 1. 위성TV·라디오방송 지면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
| (11) | 비철금속 제련·압연가공 및 방사성 광물 제련·가공 | 1. 텅스텐 제련. 2. 희토의 제련·분리는 합자·합작에만 한한다. 3. 방사성 과물 제련·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12) | 한약차 가공 및 한약제제 생산 | 1. 찌기(蒸), 볶기(炒), 뜨기(炙), 굽기(煅) 등 한약차 가공기술의 응용 및 한약제제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13) | 핵연료 및 핵 방사선 가공 | 1. 핵연료, 핵재료, 우라늄 제품 및 관련 핵 기술의 생산·경영 및 수출입은 자격을 구비한 중앙기업의 전문경영제를 시행한다. 2. 국유기업 또는 국유지분 우위기업만이 방사성 고체폐기물 처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 (14) | 기타 제조업 | 1. 상아 조각, 호골 가공, 선지·묵정(墨錠) 생산 등 민족전통공예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라.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 생산·공급업** | | |
| (15) | 원자력 발전 | 1.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16) | 관망시설 | 1. 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가스, 열 및 배급수 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송전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마. 도소매업** | | |
| (17) | 전문경영 및 특허경영 | 1. 연초, 궐련, 이중건조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생산, 도매, 소매, 수출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 중앙비축식량(식용유) 전매제를 시행한다. 중앙비축식량(식용유)의 매입, 저장, 경영 및 관리는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가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3. 면세상품 판매 사업은 특허경영제와 집중·통일관리제를 시행한다. 4. 복권의 발행·판매는 특허경영제를 시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국 복권을 발행·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 **바. 교통운송, 저장 및 우정(郵政)업** | | |
| (18) | 철도운송 | 1. 철도간선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철도여객운송회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19) | 수상운송 | 1. 수상운송회사(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에 설립된 국제선박운송기업은 제외)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중국국적의 선박 또는 선석을 임대하는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수상운송 사업 및 그 보조적 사업(국내 선박 관리, 국내 선박 대리, 국내 수상여객운송 대리 및 국내 수상화물운송 대리 사업 등 포함)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상운송 사업 경영자는 외국국적의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수상운송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국내에 해당 운송 요구를 만족시키는 중국국적의 선박이 없고 해당 선박이 정박한 항구 또는 수역이 대외개방 항구 또는 수역인 상황하에서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수상운송 사업 경영자는 중국정부가 규정한 기간 또는 운항편수 내에서 중국 항구 간의 해상운송 및 예인 업무에 외국국적의 선박을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국제·국내 선박대리기업의 외국투자자 지분비율이 5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20) | 항공여객·화물운송 | 1. 공공항공운송기업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단일 외국투주자(그 관계사 포함)의 투자비율이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의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국적의 공민이 맡아야 한다. 중국공공항공운송기업만이 국내 항공 서비스(국내선 운영권)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중국 지정 운송업자로서 정기·비정기 국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
| (21) | 일반 항공 서비스 | 1. 일반항공기업은 합자에만 한하며 농업·임엄·어업 작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항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일반항공기업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기업의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국적의 공민이 맡아야 한다. 외국국적의 항공기 또는 외국국적인 자가 중국 항공기를 이용하여 중국 경내에서 일반항공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
| (22) | 공항 및 항공교통관리 | 1.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분야의 투자·경영을 금지한다. 2. 민용항공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23) | 우정(郵政)업 | 1. 우정(郵政)기업에 대한 투자와 우정(郵政) 서비스 경영을 금지한다. 2. 서신 국내속달 사업의 투자·경영을 금지한다. |
| **사.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 | |
| (24) | 전기통신 | 1. 통신회사는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통신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부가통신업무(전자 상거래 제외)는 외국자본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기초통신업무 경영자는 반드시 적법하게 설립된 기초통신업무 전문회사이어야 하며 국유지분 또는 국유주식 비율이 51%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기존 구역[28.8Km2]은 기존 정책에 따라 집행). |
| (25) |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 1.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발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내용은 제외). 2. 인터넷 지도의 편집·제작과 출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상기 서비스 중에서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내용은 제외). 3.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업체와 외국투자자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정부에 보고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 **아. 금융업** | | |
| (26) | 은행 서비스 | 1. 은행업 금융기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금융기구 또는 특정 유형의 기구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 2. 외국인단독투자은행의 주주, 중외합작은행의 외국인 주주는 금융기구이어야 하며 외국측 유일 또는 지배주주/주요주주는 상업은행이어야 한다. 3. 중국계 상업은행, 신탁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금융기구이어야 한다. 4.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연합사, 촌(村)·진(鎭)은행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외국 은행이어야 한다. 5. 금융리스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금융기구 또는 금융리스회사이어야 한다. 6. 소비금융회사의 주요 출자인은 금융기구이어야 한다. 7. 자금중개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는 자금중개회사이어야 한다. 8. 금융자산관리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금융기구이어야 하며 금융자산관리회사의 발기설립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9.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금융기구이어야 한다. 10. 은행업 금융기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일정한 액수의 자산총액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 은행의 지배주주 권익을 취득하는 외국투자자와 중국계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촌(村)·진(鎭)은행, 대출회사 및 기타 은행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신청 제출 직전년도의 연말 자산총액이 미화 100억 달러 이상(100억 달러 포함)이어야 한다. 12. 농촌신용(합작)연합사, 신탁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신청 제출 직전년도의 연말 자산총액이 미화 10억 달러 이상(10억 달러 포함)이어야 한다. 13. 중국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은행은 신청 제출 직전년도의 연말 자산총액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200억 달러 포함)이어야 한다. 14. 해외에 등록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금융리스회사가 금융리스회사의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직전년도 연말 자산총액이 위안화 100억 위안 이상(100억 위안 포함)이거나 자유전환가능화폐를 위안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억 위안 이상(100억 위안 포함)이어야 한다. 15. 법률·법규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은행업 금융기구의 외국투자자는 신청 제출 직전년도의 연말 자산총액이 미화 10억 달러 이상(10억 달러 포함)이어야 한다. 16. 자금중개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20년 이상 자금중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자금중개 업무에 필수적인 글로벌 기구망 및 정보통신망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7. 단일 외국 금융기구 및 그의 지배하에 있거나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관계자가 발기인 또는 전략적투자자로서 단일 중국계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연합사, 금융자산관리회사 등 은행업 금융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비율이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2개 이상(2개 포함)의 외국 금융기구 및 그의 지배하에 있거나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관계자가 발기인 또는 전략적투자자로서 단일 중국계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연합사, 금융자산관리회사 등 은행업 금융기구에 공동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비율의 합계가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주주의 기구 유형과 자격에 대한 요구사항 외에도 외국인투자은행은 다음 각호의 제한을 받는다. 19. 외국 은행의 중국 내 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이 경영을 허용하는 '대리수불금', '은행카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국 경내 공민이 예치하는 건당 위안화 100만 위안 이상(100만 위안 포함)의 정기예금 유치를 제외하고 중국 국내 공민을 상대로 위안화 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0. 외국 은행 중국 내 지점의 운영자금은 본사가 무상으로 위안화 2억 위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유전환가능화폐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금의 30%는 특정 증식자산 특정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며 정기예금 형태로 존재하는 증식자산은 중국 경내의 3개 또는 3개 이하의 중국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21. 외국 은행 중국 내 지점의 운영자금 및 지급준비금 등의 합계금액 중 위안화 및 위안화 위험자산 비율이 8%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
| (27) | 자본시장 서비스 | 1. 선물회사의 외국투자자 지분비율이 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증권회사의 외국투자자 지분비율이 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단일 외국투자자가 보유(직접적 보유 및 간접적 통제 포함)한 장내 중국계 증권회사의 지분비율이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체 외국투자자가 보유(직접적 보유 및 간접적 통제 포함)한 장내 중국계 증권회사의 지분비율 합계가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의 외국투자자 지분비율이 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증권거래의 일반회원 및 선물거래소의 회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6. 중국정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주 증권계좌 및 선물계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28) | 보험업 | 1. 생명보험회사의 외국투자자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내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지분비율 합계가 75%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 보험회사에 지분투자하는 전체 외국인주주의 출자 또는 지분비율 합계가 회사 등록자본의 25% 미만인 경우 모든 외국인주주는 외국 금융기구(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신청 제출 직전년도의 연말 자산총액이 미화 20억 달러 이상(20억 달러 포함)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보험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0년 이상 보험 업무를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중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였고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이어야 한다. 3. 설립신청 제출 직전년도의 연말 자산총액이 미화 50억 달러 이상(50억 달러 포함)이어야 한다. |
| **자. 임대 및 상용서비스업** | | |
| (29) | 법률 서비스 | 1. 외국 변호사사무소는 대표기구 형태로만 중국 진출이 가능하며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상주대표 파견 시 반드시 중국 사법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중국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내 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3.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주중대표기구는 중국의 개업변호사(執業律師)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 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에 의해 채용된 보조인력은 당사자를 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 (30) | 자문 및 조사 | 1. 사회조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 시장조사는 합자·합작에만 한하며 그 중에서 라디오방송 청취율 조사, TV방송 시청율 조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차.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 | |
| (31) | 전문기술 서비스 | 1. 대지측량, 해양측량, 항공사진측량, 행정구역 경계 측량·제도, 지형도/세계행정지도/중국행정지도/성급 및 그 이하 등급 지역의 행정지도/전국 교육용 지도/지방 교육용 지도/Ture 3D 지도의 편집·제작, GPS전자지도 편집·제작, 지역적 지질/광산지질/지구물리/지구화학/수문지질/환경지질/지질재해/원격탐지지질 등 조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 측량제도회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의 개발과 응용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4.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구의 설립·운영을 금지한다. |
| **카.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관리업** | | |
| (32) | 야생 동식물 자원 보호 | 1. 국가에서 보호하는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 동식물 자원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 자원 및 미생물 자원의 채취 또는 매입을 금지한다. |
| **타. 교육** | | |
| (33) | 교육 | 1. 해외 교육기구,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단독으로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비(非)학제 직업기능 훈련은 제외)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외 교육기구는 중국 교육기구와 합작하는 방식으로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중외합작의 방식으로 모든 등급·유형의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제한을 받는다. 3.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해외 종교조직, 종교기구, 종교대학 및 종교 교직자는 중국 경내에서 합작교육기구 설립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중외합작교육기구는 종교교육을 실시하거나 종교활동에 종사하서는 아니된다. 중국 경내의 종교교육기구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구 및 취학전 교육은 반드시 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여야 한다(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국 경내에서 정주(定居)하는 중국국적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중국측 구성원 수가 1/2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교육·교학 활동 및 교과서는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야 한다.). |
| **파. 위생 및 사회사업** | | |
| (34) | 위생 | 1. 의료기구는 합자·합작에만 한한다. |
| **하. 문화, 체육 및 오락업** | | |
| (35) | 라디오·TV 방송, 전송, 제작, 경영 | 1. 각 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방송 채널과 시간대 프로그램, 라디오·TV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주파수 전환 중계국 및 일반 중계국 포함], 라디오·TV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스테이션), 케이블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등)의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며 라디오·TV 영상프로 신청 업무 및 위성TV 지면 수신시설 설치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2.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 해외 위성방송 채널의 도입에 대한 심사비준제를 시행한다. 해외 영화 및 라디오·TV 프로그램을 도입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외 영화·드라마를 수입하거나 위성전송 방식으로 기타 외국 TV방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정한 업체가 신고한다. 4.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중외합작 제작에 대하여 허가제를 시행한다. |
| (36) | 신문출판, 라디오방송·영화·TV방송, 금융정보 | 1. 통신사, 신문사·잡지사, 출판사 및 언론기구의 설립을 금지한다. 2. 외국 언론기구가 중국 경내에 상주 언론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으로 상주기자를 파견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외국 통신사가 중국 경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4.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편집·출판·제작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신문·정기간행물의 판면 경영을 금지한다. 단,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중국측 당사자의 경영주도권 및 내용최종심사권을 보장하고 중국정부가 비준한 기타 조건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중외 출판업체는 중외합작 신문출판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5. 중외 언론기구의 업무협력은 반드시 중국측이 주도하여야 하며 중국정부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6. 출판물 인쇄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중국정부의 비준 없이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8. 해외 대중매체(외국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의 신문사, 잡지사, 도서출판사, 음향출판사, 전자출판물출판회사 및 라디오·영화·TV 등 매스미디어 업체 포함)는 중국 경내에 대리기구 또는 편집부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락사무소(办事机构)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연락사무소(办事机构)는 연락, 의사소통, 자문, 접대 업무만 취급이 가능하다. |
| (37) | 영화 제작·발행·방영 | 1. 영화 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단, 비준을 거친 후 중외 기업이 영화를 합작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영화의 방영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국산영화 및 수입영화 방영시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영업체의 연간 국산영화 방영시간이 연간 총 영화 방영시간의 2/3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
| (38) | 문화재 및 인간문화재 보호 | 1. 문화재 경매업을 경영하는 경매기업 및 문화재매매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 국유 문화재박물관의 투자와 운영을 금지한다. 3. 이동 불가한 문화재와 국가에서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인간문화재 조사기구의 설립과 경영을 금지한다. 5. 해외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인간문화재 조사와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특별 심사비준·허가를 거쳐야 한다. |
| (39) | 문화·오락 | 1. 문화예술 공연단체의 설립을 금지한다. 2. 공연중개기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자유무역시범구가 소재한 성(省)·시(市)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까. 전체 업종** | | |
| (40) | 전체 업종 | 1.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의 구성원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명시된 금지류 프로젝트와 '합자에 한함', '합작에 한함', '합자·합작에 한함', '중국측 지분우위 확보', '중국측 상대적 지분우위 확보' 등 제한이 있거나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인투자동업기업(外商投资合伙企业)을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내의 회사, 기업 또는 개인이 그가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였거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의 명의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변경 사항과 연관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에서**

**삭제된 조치**

|  |  |  |
| --- | --- | --- |
| **구분** | **분야** | **2017년 버전에서 삭제된 특별관리조치** |
| 채광업 | 금속광물 및 비금속광물의 채굴·선별 | 1. 귀금속(금, 은, 백금류)의 탐사와 개발은 제한류에 속한다. |
| 1. 리튬광의 개발과 선광은 제한류에 속한다. |
| 제조업 | 항공 제조업 | 1. 3톤급 이상 민용 헬리곱터의 설계·제조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1. 6톤·9좌석 이하의 범용항공기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는 합자·합작에만 한한다. |
| 선박 제조업 | 1. 선박의 저속·중속 디젤엔진 및 크랭크축의 제조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1. 해양공정장비(모듈 포함)의 제조와 수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자동차 제조업 | 1. 신규 설립 순수 전기승용차 생산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반드시 자체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실시권을 허여받은 관련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 궤도교통설비 제조 | 1. 궤도교통 운송설비의 제조는 합자, 합작에만 한한다(고속철도, 여객수송 전용철도, 도시간 철도의 승객서비스 시설·설비의 연구개발, 설계와 제조; 고속철도, 여객수송 전용철도, 도시간 철도의 궤도와 교량 설비의 연구개발, 설계와 제조; 전기화 철도 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철도 여객차량 오염물 배출설비의 제조 등은 제외). |
| 1. 도시 궤도교통 프로젝트는 설비 국산화 비중이 70%이상에 도달하여야 한다. |
| 통신설비 제조 | 1. 민간용 위성의 설계와 제조, 민간용 위성의 유효 하중 제조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광물 제련 및 압연 가공 | 1. 몰리브덴, 주석(주석화합물 제외), 안티몬(산화안티몬 및 가황안티몬 포함) 등 희소금속의 제련은 제한류에 속한다. |
| 의약 제조 | 1. <야생 약재자원 보호 관리조례> 및 <중국의 희귀 및 멸종위험 보호 식물 목록>에 명시된 한약재의 가공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교통운송업 | 도로운송 | 1. 도로여객운송회사는 제한류에 속한다. |
| 수상운송 | 1. 외국선박 화물 검수(Tally)는 제한류에 속하며 합자, 합작에만 한한다. |
| 정보기술 서비스업 |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 1. 인터넷 이용 서비스 영업장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
| 금융업 | 은행 서비스 | 1. 외국 은행의 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이 경영을 허용하는 '대리발행·대리환매·정부채권발행인수'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 1. 외국인투자은행이 비준을 받아 위안화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최단 개업시간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
| 1. 금융자산관리회사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반드시 일정 액수의 자산총액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
| 보험 업무 | 1. 외자보험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부서의 비준 없이 그 관계사와 재보험의 출재 또는 수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 임대 및 상용서비스업 | 회계감사 | 1. 특수 일반 파트너십 회계사사무소의 수석 파트너(또는 최고 관리직책을 이행하는 기타 직무)는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
| 통계조사 | 1. 외국과 연관성이 있는 조사기구에 대한 자격인정제도와 외국과 연관성이 있는 사회조사 프로젝트에 대하여 심사비준제를 시행한다. |
| 1. 등급 평가 서비스는 제한류에 속한다. |
| 기타 상용서비스 | 1. 개인(사적 용무를 위한)출입국중개기구의 법정대표인은 경내 상주 호구를 보유한 완전민사행위능력을 갖춘 중국 공민이어야 한다. |
| 교육 | 교육 | 1. 군사, 경찰, 정치 및 당원학교 등 특수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
| 문화, 체육 및 오락업 | 신문출판, 라디오방송·영화·TV방송, 금융정보 | 1. 미술작품 및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출판물 등 문화상품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내용은 제외). |
| 문화·오락 | 1. 공연중개기구는 제한류에 속하며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해당 성(省)·시(市)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에서 "자유무역시범구가 소재한 성(省)·시(市)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으로 조정). |
| 27. 대형 테마파크의 건설과 경영은 제한류에 속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注** :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은 기존의 2015년 버전보다 10개 조목, 27개 항목이 줄어들었음. 궤도교통설비 제조, 의약 제조, 도로운송, 보험 업무, 회계감사, 기타 사용서비스 등 6개 조목이 삭제되었고 4개 조목이 통합·축소되었음.